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2018년 월 일 제 회

개발사업규정 일부 개정(안)

제안년월일	2018년 월
운용부서	건설안전처

의결사항

1. 의결주문

개발사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한다.

2. 제안이유

원가충당부채의 적정환입, 이익처리 및 공시 등 회계기준을 반영한 원가충당부채의 적정 관리를 위한 개발사업규정의 관련조항을 개정

3. 주요골자

가. 원가통제계정을 원가충당부채로 용어수정

나. 원가충당부채는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19조에 따른 제조원가 확정 시기까지 집행하지 아니한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서 향후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원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비용을 대상으로 설정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13조의 원가계산 단위별 원가 충당부채 잔액을 검토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잔액규모를 조정

다. 원가충당부채를 설정하는 부서장은 원가충당부채 설정 및 잔액 규모 조정을 위하여 원가충당부채 관리위원회 설치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1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없음

붙임 : 개발사업규정 일부 개정(안) 1부. 끝.

개발사업규정 일부 개정(안)

1. 제안이유

원가충당부채의 적정환입, 이익처리 및 공시 등 회계기준을 반영한
원가충당부채의 적정 관리를 위한 개발사업규정의 관련조항을 개정

2. 주요골자

가. 원가통제계정을 원가충당부채로 용어수정

나. 원가충당부채는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19조에 따른 제조원가 확정시기
까지 집행하지 아니한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서 향후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원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비용을 대상으로 설정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13조의 원가계산단위별 원가
충당부채 잔액을 검토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잔액규모를 조정

다. 원가충당부채를 설정하는 부서장은 원가충당부채 설정 및 잔액
규모 조정을 위하여 원가충당부채 관리위원회 설치할 수 있음

개발사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발사업규정 일부 개정(안)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0조 (원가충당부채 설정대상 등) ① 원가충당부채는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19조에 따른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집행하지 아니한 용지비, 조성
공사비, 건물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서 향후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원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비용을 대상으로 설정한다.
② 원가충당부채를 설정한 부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기준시행세칙
제113조의 원가계산단위별 원가충당부채 잔액을 검토하고, 설정목적의
이행, 변경, 또는 소멸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잔액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원가충당부채를 설정하는 부서장은 제①항의 설정 및 제②항의 잔액
규모 조정을 위하여 원가충당부채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원가충당부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개발사업규정

현행	개정안	사유
제60조 (원가통제계정 설정대상 등) ① 원가통제계정으로 설정하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6호에 대해서는 이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집행연도의 자본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금액 중 건설공사 최종 준공검사일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금액. 다만, 주택건설단지 조정공사 준공검사일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2. 해당 건설공사비에 당초 계상하지 못한 건설공사를 추가로 시행하고자 하는 공사비 3. 해당 건설공사 최종 준공검사일까지 원가로 처리하여야 할 용지비, 지장물보상금, 지장물이설비, 용지취득부대비(취득세 등 제세금을 포함한다) 및 측량등기비,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비 4. 주택 및 대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5. 소유권 보존등기비용 6. 관리소 개소비, 관리전환 대비비, 관리권이 관리청에 이양되지 아니한 도시기반 시설 유지관리비 등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원가통제계정의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 최종준공검사일 이후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준공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연도의 말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60조 (원가충당부채 설정대상 등) ① 원가충당부채는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19조에 따른 제조원가 확정시기까지 집행하지 아니한 용지비, 조성공사비, 건물공사비 등 제조원가에 투입되는 사업비로서 향후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원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비용을 대상으로 설정한다. (1-6 삭제) ② 원가충당부채를 설정한 부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기준 시행세칙 제113조의 원가계산단위별 원가충당부채 잔액을 검토하고, 설정목적의 이행, 변경, 또는 소멸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잔액규모를 조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 용어수정 - 원가충당부채가 설정되는 계정과목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설정대상으로 규정 - 원가충당부채 설정시기를 「회계기준시행세칙」 제119조에서 규정한 제품제조원가 확정시기와 일치시킴 ○ (전문개정) -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매 회계연도마다 상환병동 사항을 반영하여 지구별 원가충당부채 잔액 조정

현행	개정안	사유
회계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2. 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비용은 관리업무 인게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본부장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은 해당 지구의 정산이 완료된 회계연도까지로 한다.	(1-3 삭제) ③ <u>원가충당부채를 설정하는 부서장은 제①항의 설정 및 제②항의 잔액규모 조정을 위하여 원가충당부채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u> ④ 그 밖에 원가충당부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신설) - 원가충당부채 관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마련 ○ 용어수정